

인간을 생각하며 내일을 열어갑니다



세계일류, 삶의 보람, 신뢰받는 기업으로
현대자동차가 풍요로운 삶을 펼칩니다

큰 일꾼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현대자동차 -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풍요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삶의 보람을 창조하는 인간존중의 기업으로,
나라와 사회에 봉사하는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c.a.15

제15대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청회

- 일시 : 1996년 3월 18일 (월) 오후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15대 총선을 대비한

각 정당 여성정책 공청회

일시 : 1996년 3월 18일 (월) 오후2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 회 : 이은영 (본 연맹 이사, 한국외국어대 교수)

각 정당 여성정책 발표

- 윤숙희 (신한국당 여성국 부국장)
- 안상님 (새정치국민회의 여성특위 부위원장)
- 엄금자 (민주당 여성특위 부위원장)

토론자 발제

- 여성의 정치참여부문 : 백영옥 (명지대 교수)
-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문
: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 여성인권부문 : 이상덕 (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 아동보육, 방과후 아동보호 및 학교급식
: 위양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목 차

1. 각 정당 여성정책

- 1) 신한국당 5
윤숙희 (여성국 부국장)
- 2) 새정치국민회의 19
안상님 (여성특위 부위원장)
- 3) 민주당 29
엄금자 (여성특위 부위원장)

2. 토론자 발제문

- 1) 여성의 정치참여부문43
백영옥 (명지대 교수)
- 2)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문46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 3) 여성인권부문55
이상덕 (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 4) 아동보육, 방과후 이동보호 및 학교급식60
위양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1. 각 정당의 여성정책

1) 신한국당	5
윤숙희(여성국 부국장)	
2) 새정치국민회의	19
안상남(여성특위 부위원장)	
3) 민주당	29
엄금자(여성특위 부위원장)	

신 한국 당

I. 신한국당 여성정책 결정과정

15대 동안 여성을 위해 추진할 여성정책을 준비하면서 여성단체, 노동단체, 주부, 연구기관 그리고 여론조사 등 각계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 조정, 당지도부의 최종 재가를 얻어 당 여성정책으로 결정되었다.

당 정책위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재정능력, 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사업만을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면 여성의 정치 및 공직참여 부문,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문, 인권부문, 그리고 복지부문 순으로 신한국당의 여성정책을 발표 하겠다.

II. 여성의 정치 및 공직참여를 확대한다.

1. 국회 및 지방의회에 여성공천을 확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57%를 여성에게 할당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당의 기본정책 및 당헌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 공천확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

2.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서너명의 여성에게 지역구 공천을 주고 비례대표의석의 두세석을 선심쓰듯 여성에게 할당했다고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역에서의 인지도, 득표력, 조직력, 자금력 등에서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매번 선거에서 느끼는 점이지만 제반조건을 갖춘 여성후보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당은 여성후보 양성을 위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반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할만한 인물을 발굴하여 집중훈련을 시킴으로써 정치예비군을 양성하는 것이다.

量(Quantity)이 質(Quality)을 창출한다고 한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코자하는 저변 여성층이 형성될때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가능하며 비로소 유능한 여성후보가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공직부문의 채용, 승진, 배치, 교육, 훈련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 남녀불평등 요소를 불식시킴으로써 민간 부문을 유도하고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토록 한다.

○ 5급, 7급 행정직 등 중간관리자의 여성채용 목표제 및 공기업 여성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을 모니터하고 지원하겠다.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에 있어 여성의 참여율은 상당히 높지만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5급이상 고위직의 경우 2%밖에 되지않아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은 매우적다.

또한 공기업 여대생의 채용 현황을 볼때

‘94년기준 가스공사 전체 83명중 1명(1.2%), 주택공사 135명중 4명(2.9%), 한국통신 68명중 4명 (5.9%)으로 매우 저조하다.

따라서 5급, 7급 행정직등의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 2000년까지는 20% 목표를 달성토록하고, 공기업 여성채용 인센티브제를 도입 실시토록 모니터하고 지원하겠다.

○ 여성공무원의 승진할당을 권장하고 능력발전을 위한 국내외 연수 기회를 여성공무원에게 대폭 확대하겠다.

○ 여성관련 행정기구를 강화하여 성차별적 관행을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정부내 성차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에 남녀평등 담당관을 지정한다.

○ 각종 국제행사 관련 정부대표단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 정부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2005년까지 30% 상향조정하겠다.

4. 특별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 확대한다.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입학에서부터 여성차별을 불식시킴으로써 자격있는 여성 공무원 예비군을 양성한다.

- 육·해·공군 사관학교 여학생 입학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한다.
- 경찰대학, 세무대학, 철도전문대학 등 공무원 양성 특별 교육기관의 여학생 입학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 혹은 폐지 함으로써 2000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50%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

Ⅲ.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지원·촉진한다.

1.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촉진하여 모성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여성고용에 따른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등 모성보호비용을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에서 부담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성 보호를 강화한다.

2. 국제노동기구(ILO)등 국제협약에 못미치는 여성관련 국내법의 내용을 보완한다.

- 출산휴가가 산후 30일 이상을 포함한 최저 60일유급 보호휴가로 되어 있는 것을 ILO 기준에 맞춰 6주이상의 의무적 산후휴가를 포함하여 최저 12주 즉 84일의 출산휴가로 확대토록 검토 하겠다.

3.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육수요를 완전 충족시킨다.

- '97년까지 총 1조3천억원을 투자하여 읍·면·동당 4개소 수준인 13,678개소로 확충한다.
- 보육시설비 및 시설임차비 장기저리 융자를 확대한다.

4.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아 및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확대한다.
-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운영을 내실화 한다.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한다.
- 학교내 탁아방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5. 공동육아협동조합 및 종교단체부설 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한다.

- '96~'97년에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후 확대 실시 한다.
- 국민연금 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시설건축비 : 5년거치 10년으로 평당 300만원, 총 9억원이하 지원

시설설치비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평당 300만원, 총 6억원
이하 지원

- 종교단체내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및 보육시설의 종교목적 활용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한다.

6. 주부의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 '97년까지 초등학교 전면실시하고 '98년부터는 농어촌 중·고교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7. 방과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지도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방과후 아동지도제를 실시한다.

- '96년 500억원의 설치유자금 확보

8. 가내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며 또한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규제토록 한다.

- 비취업 여성중 84.4%가 시간제근로와 같은 탄력적 근로형태를 원하고 있고 '92년기준 40여만명의 파견근로자가 취업중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책 시급
- 그러나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정규직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규제조치 또한 필요하다.

9. 여성인력 양성체계를 다각화하고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한다.
- 여자공고의 신설을 확대하고 기존 공고의 남녀공학 확대를 지원한다.
-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을 확대 및 내실화 한다.
- 기능대학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확대하고 시설투자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여자대학내 이공계대학의 설치와 기존대학의 여성진출 분야 학과의 정원을 확대한다.
- 지역별 인력 은행을 설치하여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알선 전산망을 대폭 확대한다.

10. 여성취업 증진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시정토록 한다.

IV.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

1.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한다.
2. 가정내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매맞는 아내, 학대받는 아동, 노인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격리, 치료, 순화 교육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3. 대중매체를 비롯한 성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안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한다.

V.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1. 주부 가사노동 가치의 합리적 산정을 통해 전업주부의 연금수급권보장 등 각종 보험 및 연금, 세제상의 성차별 요소를 시정 한다.
2. 가족법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 상속지분을 확대하고 동성 동본불혼범위를 조정한다.

3. 저소득 모자가정 고교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다.

○ 저소득 모자가정의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자녀에게는 학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으나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지원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7년부터 인문계 고교생 자녀에게도 학비지원을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인 시설의 인문계 고교생에게는 '96년부터 학비지원하고 있음

4. 영세민지역 사회 복지관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5. 중풍 및 노인치매 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6. 재가 복지사업을 확대한다.

7. 농어촌 지역 여성의 여가활동 등 사회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 한다.

○ 시·군 단위에 설치된 여성회관이 29개에 불과하므로 '97년부터 매년 3~5개소의 여성회관을 시·군 단위에 설치한다.

8. 여성발전기금 설치 등 여성관련 재정 및 복지예산을 확대 한다.

○ 작년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은 주도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통과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 세부적 추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권익 증진활동 및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국제교류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다.

또한 GNP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 그 중에서도 5~6%정도 밖에 안되는 여성관련 복지에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여성 농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 '94년부터 여성의 경우 개인별 평가점수에 50점을 가산, 후계자 선정시 혜택을 주고 있으나 '95년의 경우 전체 후계자의 5.7%만이 여성으로써 아직 미비한 수준이므로 여성의 영농 후계자 선정을 확대하여 여성도 새로운 영농기술과 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VI. 성평등의식과 문화를 정착시킨다.

1. 남녀평등 의식의 함양을 위해 각급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한다.

○ 교과서 및 교과과정을 재검토·개편한다.

○ 각급 학교 교원 연수시 성평등과목을 개설한다.

2.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차별 감시체제를 마련한다.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문화의 진작과 이를위한 사회교육, 홍보활동 등을 적극 지원한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새정치국민회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글로 보이며, '조선의 역사'라는 제목이 보인다.

ILO, UN 국제기구는 여성정책의 기반이 되어야하는 기본 관점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첫째는 여성도 자신이 가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노동권과 평등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것, 둘째는 여성이 생리 임신 출산 수유의 고유한 모성기능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나 이를 기반으로 여성을 자녀양육자이며 가사담당자의 역할로만 고착화하여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을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점, 셋째 남녀는 공동으로 가정과 직장 정치 사회 환동에 참여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국가와 기업은 법제와 조건을 갖추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정책의 기본 관점과 함께 21세기는 여성 인력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렛대가 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능력이 사회 각 부문에서 제대로 발휘되도록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의 평등한 권리실현과 사회참여 확대에 남여공동책임사회가 실현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둔다.

I.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서의 여성의 참여 확대

전체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6.5%이나 정책형성참여직위인 5급이상의 경우 1.9%이며 95년 12월 현재 여성장관1명, 차관 1명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참가율은 116개국 중 90위를 차지한다. 정부 각 부처에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94년 현재 6.2%를 차지한다.

또한 의회의 여성진출을 살펴보면 지난 6·27선거의 단체장 및 의원직 진출 여성은 전체 5,756명중 2.2%인 127명이 차지하고 국회의원의 비율은 299명 중 6명으로 2%만이 차지한다.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내 여성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정책결정직에서 일정비율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

② 각종 선거의 비례대표배분에 있어 여성에게 25%이상 할당하며 지역구에서도 이 정신을 살려 여성을 공천한다.

II. 여성의 고용기회확대 · 고용평등강화 및 여성의 고용불안 정애소를 위한 사회적 여건 강화

정부의 신인력정책의 주요전략인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형태는 2중구조화이다. 즉, 여성의 노동에 대한 욕구증가를 이용하여 시장의 구조달 성별을 중심으로 근로조건, 승진기회, 고용안정성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는 남성이 주를 이루게 한 반면, 여성은 불리한 주변적 위치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태는 여성노동자를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상태에 있게 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 진정한 여성노동정책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같은 문제인식에서 국민회의의 여성노동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 고용기회의 확대 ② 고용평등 ③ 불안정고용 해소 방안 ④ 모성보호의 사회적 부담화 ⑤ 취업로의 자녀양육 지원방안 ⑥ 산업재해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인정기준확대 등이다.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나올 수 있으나 핵심적인 과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핵심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의 고용기회확대 및 고용평등 강화

- ① 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부문에서 여성고용할당제를 도입한다.
- ② 승진, 업무배치,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승진, 업무배치,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의 여성할당제를 도입한다.
- ③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착을 위해 직무평가제를 도입한다.
- ④ 남녀고용평등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위해 남녀고용평등감독관제를 신설한다.
- ⑤ 직장내 건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간접차별규제를 위하여 고령법에 간접차별규제와 직장내 성희롱 규정조항을 신설, 개정한다.

2. 여성의 고용불안정 해소 - 여성의 실업대책방안과 고용보험

- 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총액의 60%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한다.
- ②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고령법에서의 간접적 차별 규제 조항)
- ③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노동관련법을 전면 적용토록한다.
- ④ 공공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및 여성전

용직업훈련원을 확대한다.

III. 모성보호 및 아동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여성 관련 복지 부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 원정책을 강화

1994년 현재 여성경제참여율 47.9% 중 미혼여성참가율은 50.5%로 이들 대다수 결혼 후에도 직장에 계속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아동양육은 여성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 이에 대한 해결의 의무는 사회 전체에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 비용과 아동양육 비용을 사회가 공동부담하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지움으로 인한 여성노동 회피에서 적극적 고용을 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여성복지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 흐름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하는 시혜적인 급여로부터 모든 여성을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하는 보편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빈곤과 성차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저소득 여성 계층에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단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인정되기는 커녕 요보호여성에 대한 시혜적 급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적용대상이 국한됨으로인해, 대부분의 여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가 어렵게 되어있고 의료보험법에서 부양자 인정기준은 남녀차별에 기준하므로 여성은 차별받고 있으며 생계유지자인 남성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가정하에 차별이 당연화되고 있다.

국민회의는 남녀평등의 관점에 기초하여 여성을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모성보호비용 등을 사회부담으로 한다

- ① 산전후 휴가 12주로 확대한다.
- ② 유산휴가 및 임신중 정기검진휴가, 7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제화한다.

2. 아동보호 - 탁아소의 확대 및 방과후 아동보호제도 도입

1) 탁아소 확대

- ① 탁아소를 우체동 거리로 확대한다.
- ② 직장여성의 경우 탁아비용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 ③ 상시고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는 직장탁아소설치를 의무화한다.
- ④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
- ⑤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을 전국 시도별로 한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 방과후 아동보호제도 도입

① 초등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 등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방과후 아동 시설로 이용토록 한다.

3) 학교급식제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즉각 실시하고 2000년대 초까지 중학교 급식을 실시한다.

3. 여성노인, 도시빈민여성, 농어촌여성,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1)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정책

- ①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과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노인에게 지급되는 대상연령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노령수당 급여수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 ②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치매종합센터를 증설하여 치매노인가족과 가계의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치매예방, 진단, 치료기법 등을 보급한다.
- ③ 경로당의 화장실, 취사시설 및 난방시설 등을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지역사회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게 한다.
- ④ 저소득층 지역 경로당에 무료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한다.
- ⑤ 정년의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퇴직 후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며 노인직업교육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여 소득보장과 함께 삶의 보람을 느끼는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 ⑥ 성인병 및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2) 도시빈민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 ① 생업자금 등의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도시빈민여성세대주의 자활을 유도한다.
- ②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을 '97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학생에게 까지 확대하며, 이공계 및 인문계 전문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다.

3) 농촌여성에 대한 복지정책

- ① 영농후계자선정과 품목별 전업농 및 선도농, 각종 후계인력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교육훈련과정에서 여성농민할당제를 실시한다.
- ② 여성농민의 건강을 위하여 군단위의 모자보건소 등을 확대하고 농약중독이나 성인병 예방을 위한 예방검진체계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 ③ 여성농업인력이 많은 농업재해 등도 산재보험 범위에 적용한다.
- ④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 연금제도의 최저등급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학비감면, 대학생 학비 무이자 대출, 농어촌 지역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독서실, 체육관 등을 현대화하고, 농어가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4)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 ①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새로운 직종개발에 노력한다.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권장정책을 시행한다.
- ②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을 '97년부터 전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며 수당액도 상향 조정한다.
- ③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여성장애인과 직접관련된 정책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일정하게 보장한다.
- ④ 장애인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장애인자녀를 가진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저등급보험료의 일부를 균등 지원한다.
- ⑤ 자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서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 ⑥ 장애인 전문기능대학을 설립하여 기능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에서의 여성차별을 해소한다.

1) 의료보험제도

- ① 임신부수첩제를 도입하여 모든 임신부, 태아, 영아, 유아에 대해 무상으로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 ② 어린이 예방접종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배우자"의 자격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 ④ 분만급여시 현행 2자녀 제한을 철폐한다.

2) 생활보호제도와 보호에서의 성 격리

- 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조비를 '97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까지 지급한다.
- ②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을 1997년부터 인문계 고등학교학생에게까지 확대하며, 이공계, 인문계 전문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와 여성의 직업재해

- ① 여성노동자의 직업병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 ② 농어업재해, 특히 여성농업인력이 많은 농업재해 등을 산재보험 범위에 적용한다.
- ③ 산재환자에 대한 의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방진료를 보장한다.

IV.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

세법상의 성평등문제는 변화된 경제 및 사회여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법 개정의 기본취지를 세법규정에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는 근로여성의 근로의욕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여성이 창출하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공평하게 과세하느냐 하는 문제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생전 또는 생후의 재산귀속을 어떻게 세법상 취급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다. 독신여성의 중대, 맞벌이 부부 수의 중대 등 여성을 위한 제반환경 및 여건의 변화는 종전의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에서 적용되던 세제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각종 문제를 야기시킨다.

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여 관련세법 등에 반영한다

V. 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의 성차별 및 성역할정형화의 개선제도 정착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남녀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②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 및 성의 상품화를 배제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다.
- ③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가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남·여학생 모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공립학교의 중·고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 증설하고 사학에 대해서도 이를 권장한다.

VI.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처

- ① 국가사회적 보호차원에서 아내구타 및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가정폭력관련법을 제정한다.
- ②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부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폭력, 아동학대 신고센터와 상담소를 시군구단위로 개설한다.
- ③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하여 학교, 학부모, 지역행정기관, 사회단체, 경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한다.

VII. 「여성부」를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정책 부서로서의 기능 강화

현재 여성정책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부, 교육부, 보사부, 총무처 등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여성의 고용, 탁아와 복지, 양성평등교육, 행정부내 인사 등을 담당하는 업무 등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초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시행명령을 지닌 권한이 현 정부제2장관실에는 없다. 현재 정부제2장관실은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되어 있어 여성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에는 재원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타 부처의 여성정책에 대한 권고 이상의 권한이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수립의 주체로서의 여성부의 신설이 요구된다.

여성관련 입법발의권, 여성정책발안권과 각 부처간의 여성관련정책이 기획·조정·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면에서의 집행권한을 갖는 「여성부」를 신설한다.

민 주 당

여성의 정치참여 부문

정치영역에서는 소수의 남성정치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일수록 핵심 지도층의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폐쇄적으로 결정된다. 여성은 더욱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당은 한두명의 지도자 중심으로 사당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남성본위 조직체와 보스중심의 동지애로 여성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금이나 조직상의 불합리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은 지역구 진출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13·14대 지역구 당선 여성 국회의원이 전무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성의 힘을 결집시키고 재정지원을 마련한다.

(예)미국 엘레노 루즈벨트 기금(Elenore Roosevelt Fund), 우먼 캠페인 기금(The Women's Campaign Fund)같이

·여성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혁, 선거공영제의 확대, 선거자금의 공개화 등 선거법의 개정 등을 줄기차게 주장한다.

·정당차원에서 지역구에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공천해 주는 정당 공천할당제를 한시적으로 채택

·임명직에도 여성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 각 부서에서 직급별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각 기업체에도 권장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는 개혁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핵심적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언론매체나 교육을 통한 성차별 철폐확대.

·51%의 여성유권자들을 조직화하여 정치적 힘을 창출하도록 여성계가 앞장서야 한다.

·여성정치인과 남성정치인이 어떻게 다른지 차별화하여 이를 부각시킨다.

기성 남성정치인들이 끝도 한도 없는 권력추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고 도덕적인 여성 정치인의 모범을 제시한다.

·유능한 정치인을 성장시키고 선거 사무장, 선거운동원 양성에 교육과 훈련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실시한다.

·전국구 후보자 명단의 1~10번 사이에 남녀 후보자 반반씩, 11번부터 20번 사이에 남 30% 여 70% 등 구체적으로 정당의 공천 명단에 쿼터제를 도입한다.

·정무장관 제2실을 여성부로 개편,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총괄조정과 그 사업의 집행을 위한 부서로.

·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의 명실상부한 주관업무 부처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정무장관 제2실로는 역부족임을 주지시킨다.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하여 5·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제고, 2000년까지 20%목표, 전체 공무원중 여성비율은 26.5%에 이르고 있으나 일반직의 경우 17.5%로 낮고, 6,7급은 10.5%, 정책결정참여 직위인 5급 이상의 경우 1.9%에 불과, 정부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 확대, 94년 9월말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 7.2%를 2000년 30% 달성목표

·공직선거 및 공공기관에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도입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시 비례대표에 여성 일정비율 할당, 공기업, 공공기관에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여성의 정책참여 기반 확대.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는 2중혜택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 5급 행정직과 외무직 7급 행정직 공채에 있어서 적용되는 군복무 가산점과 군복무 기간의 호봉인정 2중 혜택을 호봉인정 단일 채택으로 하고 가산점은 폐지.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부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채용후 교육훈련, 배치, 승진, 해고, 퇴직 등 차별이 심한 상태에 있다.

·남녀고용평등법(87.12)이 제정, 개정 되었으나, 성차별 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위반시 벌칙이 약해서 실효성이 적다.

·고임금 사업체는 실제로 남성위주 채용관행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저임금 사업체에 고용되어 저생산성·저임금이 강요되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정부부문 및 공기업에서 일정비율의 여성고용의무제를 실시하여 점차 고임금 사업체에 확대 적용한다. 공공부문에서 여성인력전담 직업훈련소를 설치·운영하여 저임금 사업체에서 감원·해고된 여성 노동자의 전직 훈련을 강화한다.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건물을 복층화·고층화하여 공공탁아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여성의 노동권리를 보장하고 육아관련 퇴직의 관행을 폐하고 정부차원 노력 모색.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여성이 결혼과 더불어 퇴직하는 고용관행을 철폐하고 동시에 육아휴직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고용보험법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유도.

·여성이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통신·정보처리·안전관리·품질관리·산업응용·환경관리 등 공공직업훈련과 산업구조의 소프트화 혹은 정보화에 부응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 감독관을 신설 배치하여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양성평등 이념에 맞는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즉 현행 근로감독관보다 관리범위를 확장하여 고용평등에 관련부분만 전달토록 한다.

·금융기관의 간접차별 철폐, 행원과 종합직으로 나누어 여성에게 승진·승급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간접차별을 없앤다.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수립, 임시직 시간제 고용의 증가추세의 현상향을 감안할 때 그 보호 입법을 마련한다.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의 직업훈련 확대와 취업 정보센터 활성화

현행 직업보도시설의 직업훈련 내용을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개발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규정을 추가시켜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해야 한다.

여성인권부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문제

한국의 성범죄율이 세계 3위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강간범죄나 성폭력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고 강간의 경우 신고율은 2.2%에 불과하여 그 심각성에 비해 은폐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보은·김진관 사건과 같이 근친에 의한 성폭력,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향락산업의 번성은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전국 45만개의 향락업소는 성의 상품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행 형법32장은 정조에 관한 죄로 되어있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정조를 빼앗긴 것으로 잘못 인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현행 성폭력 관련법으로는 다양화, 흉폭화, 첨단화 되고있는 성폭력을 규제, 단죄 할 수 없다.

지하철, 택시, 대중교통수단이나 컴퓨터 등 첨단 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신종 성폭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고 성폭력 범죄 유형을 세분화한다.

형사처벌, 자격정지, 교정처분, 교육훈련 등

·현행 강간, 강제추행에 관한 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고 고소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구제가 곤란하다.

친고제를 폐지하고, 제3자 고소로 고발 가능해야

법 인용에 있어서 경찰의 공개적, 권위주의적, 남성주의적 수사관행이나 재판 절차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 강화와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의 제정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확대, 신속한 증거확보와 피해자의 효과적 치료를 위해 보건소, 종합병원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의 강화와 양성평등 교육실시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가 존중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진술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관련 여성단체 및 기관의 실무자나 사회사업가의 동행·방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성폭력 전담부서를 경찰이나 검찰내에 설치하여 전담부서 실무자들의 성차별적 시각이나 통념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폭력, 매맞는 70%의 여성에 대하여 상담 이상의 장치가 없다. 한편 매맞는 남성에 대한 것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은 사적 공간으로, 절대적 분리공간으로 보는 태도가 변화해야
병든 노인 부양, 맞벌이부부 자녀보호, 아내구타, 빈곤가족 생계, 주거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의 정책화가 시급하다.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동성애 가구, 독신 가구, 이혼자에 대한 편견, 장남과 동거형태를 이상화하는 인식 등의 고정관념 수정해야

·가족의 은폐된 폭력성은 사생활권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으나, 다른 사회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가정은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

·농어민 여성: 농어촌 여성인력확보 정책

남성 청년층 이직율이 높은 것은 농어촌에 젊은 여성인구가 적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므로 젊은 여성을 농어촌에 거주 시키기 위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독려, 화장실·부엌개량, 소득 증대사업,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취로사업 실시, 해당지방공무원 선발에 있어 지역 여성 우선권 부여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적 소외로 인한 상실감 제거, 기계화 농업에 맞는 농지정리, 첨단농어업기술훈련 제공, 농어촌 단지의 젊은 여성 우선 배치

농어촌 소득증대와 환경정비, 모자보건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료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호, 농어촌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확대 시행

농어촌 여성의 농번기에 노동근로시간이 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농어업 가사등 과중한 부담으로 91.7%의 여성농민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의료혜택, 보건복지 등 확대 실시

봉고차 1대로 몇개 마을을 돌며 인근 초등학교, 마을회관, 병설 유치원 이용을 돕고 탁아혜택 고려

·도시빈민여성

도시빈민 여성을 위해 취업정보, 기술훈련, 문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종합 복지관을 만들겠다.

주거환경개선, 공공 영구 임대주택보급을 위한 공공주택기금 모금

주택임대차 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세입자 권리보장

주택금융확대, 융자혜택, 부적절한 재건축 피해자 감소방안 강구, 빈민여성을 위한 부녀복지회관 설립 운영

·노인여성

노령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을 상향조정하고, 단순한 지원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동의 장 마련, 노인 복지법 재정,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여성 가정에 대한 사회보험, 공적 부조, 직업복지, 할인제도, 취업알선, 세제혜택 등을 통한 소득보장과 의료보험, 의료보호, 건강진단, 노인의료센터(예:의료보험에서 노

노인에 자기부담, 입원시 자기부담율을 5-10% 낮추고, 안경, 보청기, 의치를 5년에 1회 의료보험에서 지급) 등 각종 사회복지(개별 가족상담, 우애방문, 가정봉사원 전화방문, 노인정 운영비 지원, 노인 휴양시설 등) 서비스의 프로그램 수준의 질적·양적 확대, 자녀와 별거 지양, 노인여성 거주에 맞는 주택보급, 무의탁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시설, 여가대책과 교육실시, 지역경로당 정비

·장애인 여성

일하기를 바라는 여성에게 경로당을 통한 일자리를 보장, 직업재활 서비스, 각종 수공예품 상설매장 개장, 공공기관 시설내에 매점·자동판매기, 우표,홍삼, 담배 판매점을 장애여성에게 우선 허용, 기술습득을 위한 기회부여와 직업훈련의 장을 마련, 장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 활용체계와 진단체계 구축

장애여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확충

·탁아·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2000년 까지 보육을 100%제고, 탁아문제 해결

더이상 육아는 어머니의 사적 책임이 아니다. 91년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도 육아를 어머니의 배타적 권리·의무로 규정 수익자부담원칙을 근간으로 하였다. 즉 국가의 육아에 대한 기본적 의무규정은 빠지고 재정 뒷받침의 구체적 원칙은 명문화 되지 않았다. 1주일 주·부식비 800원, 5년경력 보육사 290,000원 월 급여는 비현실적 수준

전체 여성 46.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45%가 기혼여성임을 볼 때 공동육아 협동조합제도 육성지원

보육아동을 둔 30-40가구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육성 지원

종교·사회단체 보육시설 운영의 권장과 지원

장애아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영아교사 양성기관 설립하고 영아보육 활성화 해야

저소득층 밀집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대

보육비용 지원대상 가구당 1,200,000원 이하 소득 가구로 확대

영유아보육법 개정,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또는 보육비용 지급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조례제정권 인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강화, 지역단위의 공동육아,

국가재정으로 부족되는 지원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 체제로 충당할 수 있도록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등적 보육료 설정,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 초등학교 단위별 학부모 연대하여 학교 당국과 협의하에 바람직한 방안 모색

사회교육 전문 요원 배치 검토와 자원봉사원 발굴 모색

·모성보호

피임,낙태,강요된 성적활동에서의 부작용을 태아사망, 유산, 조산, 사산, 저체중아 출산, 기형아 출산, 발육부진 등을 막기 위한 적극적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장 건강관리 기관에서 직업병을 진단하고 그러한 질환에 대한 보고 체계와 대책 시급

유해 물질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하고, 매년 건강진단의 실시

여성진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1차 의료의 강화

여성상담기관의 교육 강화해야

여성관련 건강·보건 지표개발 시급

여성과 신생아의 이환율, 사망율, 사고와 이상확인의 기본 자료를 개발하고 원하는 수준의 영양식품의 질 향상

식수 위생

주거환경, 안전한 노동과 생활환경으로 여성의 노동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 의료서비스 보급 촉구

정부는 불법적 유산방지에 적극 나서야

육아휴직기간 호봉인정,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체계 확립

출산휴가기간 산전, 산후 90일로 확대

자녀 병가제와 남편의 출산 휴가제 실시

12세 이하 자녀의 발병시 간병을 위한 부모의 휴가 인정

처의 출산으로 인한 남편의 3일간 휴가인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적용 사업장 범위 현행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기타

- 학교급식을 통해 주부의 도시락 고민 해결
- 동성동본 불혼제 폐지
-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로 평등한 가족생활 보장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 혼인 연령의 남녀 동일화
- 사회보장부문에의 차별 철폐
- 여성 세대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배우자 보장을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을 남편, 전처와 동등하게 인정
-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서 기혼녀의 자녀와 손녀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제한 철폐
- 정부의 직업지원, 직업훈련 및 자활 프로그램 실시, 교육기간중 생계비 지원
- 여성세대주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모자 가정에 대한 자립 자금의 지원확대
- 올바른 성교육 실시와 초중등 교과에 양성평등교육 실시
- 각종 대중매체의 남녀 차별적 내용 감시 및 지도강화
- 여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강화
- 여학생 입학제한 학교에 대한 제한 철폐
- 대학 진학 못한 여학생에 대한 취업지도 강화

2. 토론자 발제문

1) 여성의 정치참여부문	43
백영옥(명지대 교수)	
2)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문	46
왕인순(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3) 여성인권부문	55
이상덕(한국여성의전화 부회장)	
4) 아동보육, 방과후 아동보호 및 학교급식 ...	60
위양자(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여성의 정치참여부문

백 영 옥
(명지대 교수)

4.11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5대 총선은 20세기에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로 이번만은 세계화와 정보화의 세기적 변혁의 흐름 속에서 21세기에 통일된 선진사회의 건설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진정한 우리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어리석음을 여러 번 되풀이한 전력이 있기에 더 이상 부끄러운 선택을 하면 안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선거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96년 3월 총선을 치른 스페인과 호주의 경우 부정부패의 추문에 휩쓸렸거나,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한 정치인들이 선거혁명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4월과 6월에 총선을 치를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깨끗한 정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로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도 선거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법과 제도로 마련되었다. 선거법의 개정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금권과 관권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여지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떠한 후보를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로 뽑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린 셈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출마자가 많아 약 5.3대 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경합이 심할 경우 몇백표 내지 몇십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에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경우 당락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여성유권자를 겨냥한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원래 정당의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강 정책을 추진하며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워 국민으로 하여금 지도자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은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당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경우 각정당의 정책 특

히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관심있는 분야의 정책부터 현실성 없는 달콤한 선심공약인지,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총선을 2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 신한국당, 국민회의, 민주당이 내건 여성정책중 여성정치참여부문에 관한 공약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부문과 관련된 공약에서 신한국당은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5급, 7급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정부내 성차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5년까지 30% 상향조정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후보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선거의 비례대표배분에 있어 여성에게 25% 이상 할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위정책결정직에서 일정비율의 여성의 참여를 기본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여성처를 신설하고 전국구의원 후보자 명단의 1-10번 사이에 남녀 후보를 반반씩 11-20번 사이에 남 30% 여 70% 등 구체적으로 공천 명단에 쿼타제를 도입할 것을 기본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해 5급,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제고, 2000년까지 20%,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0년까지의 30%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정당들이 여성들의 요구를 집약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여성정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의 문제를 당의 공약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여성정책에 관한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에는 세당이 모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내건 공약의 약속이행여부와 실현가능성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첫째, 여성정치부문의 공약중 가장 관심분야인 여성의원의 공천문제부터 살펴보면 후보 공천시 여성을 우대하겠다고 한 각 정당의 공약이 공약이 되었다. 신한국당의 경우 253명의 지역구 공천자중 여성을 한 명밖에 공천하지 못했으며 이는 당선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당원이 전체 당원의 70%에 달하고 있으며 與權지향적인 女性유권자의 성향으로 선거시 여성표를 더 많이 받아왔던 여당에서 그 동안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를 하나 이상 키우지 못한 점을 볼 때 공약으로 내건 여성후보 양성을 위한 장기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의 57%를 여성에게 할당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발표될 전국구 후보명단을 보고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신한국당의 공약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는 다른 당에 비해 가장 많은 5개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했으며 추미에후보 등 여성후보 발굴에도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공천=당선이 아니기에 이들 후보의 당선을 위한 당의 배려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회의는 각종선거의 비례대표배분에 있어 여성에게 25% 이상 할당한다고 공약했다. 15대 총선 전국구 명부에 25%에 달하는 여성후보가 들어가는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전국구의원 후보자 명단의 1-10번 사이에 남녀 후보를 반반씩 11-20번 사이에 남 30% 여 70%를 공천하겠다고 해 세당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약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여성 정치인의 확대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구 여성출마자가 하나도 없어 전국구의 여성후보 공천의사가 그대로 실현되는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직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신한국 당은 5급, 7급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실시를, 민주당은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도입해 5급, 7급 공무원 여성합격자의 비율을 제고, 2000년까지 20% 올릴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직사회의 반대여론 등을 뛰어넘어 장미빛 공약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신한국당이 제시한 정부내 성차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5년까지 30% 상향조정과 민주당이 제시한 정부내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2000년까지 30% 목표는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제시한 여성부 또는 여성처의 신설 또한 선거결과에 따라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 정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느 정당이 여성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여성과의 약속을 이행했는지를 파악해 정당선택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정당을 스스로 선택하고 투표를 한다는 의식을 공략하면 넘어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여성 유권자들도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잣대로 정당을 평가해 정치의식 있는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이번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확인시켜야 되겠다.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평등부분

왕 인 순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국장)

1. 여성의 고용안정

1) 정부의 여성고용정책 방향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력 수급을 탄력적으로 조정, 활용하는 유연화전략,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비정규 노동력으로 충원하고 주부인력의 산업인력화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의 비정규직화와 주변노동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고용촉진정책 속에서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은 대단히 부실하다고 평가한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의 여성개발부분계획중 여성취업안정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다양한 직종발굴과 시간제취업 확대에 그치고 있다. 한편 대통령선거공약과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근로형태 개발, 시간제근로자법제화, 재택근로제도 도입, 기혼여성재고용장려제도가 제출된 바 있다.

2) 각 당의 정책에 대한 입장

(1) 신한국당은 가내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며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규제토록 한다는 정책을 제출했으나, 어떤 규제조치와 어떤 보호조치를 제안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국민회의는 비정규직 고용확대규제(평등법내 간접차별규제조항)와 임시직,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법 전면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3) 민주당은 임시직, 시간제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를 위해 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3)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현실

(1) 1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서의 상용노동자 비중의 하락

(2) 전체여성노동자중 시간제여성노동자 비율 증가

(3) 92년 신규채용 비정규직중 여성비율 72.7%(조은, 조순경, 94년 조사)

(4)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직 증가의 유형: 신규채용시 비정규직으로 대체, 결원시 비정규직으로 충원, 정

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여성이 정규직 여성의 28%에서 50%까지 차지하는 기업들이 많고, 정규직 여성보다 비정규직 여성이 훨씬 많은 기업들도 증가

- 은행의 경우 92년 여행원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파트타이머가 급증

(5) 시간제, 파견노동자가 정규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으나, 임금의 60% 밖에 받지 못하고 승진, 업무능력개발, 후생복지 및 사회복지에서 배제되고 부당한 해고위험을 받고 있다.

(6) 이름뿐인 명목제 시간제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부의 시간제노동에 관한 지침과 같이 주 30.8시간 미만을 일하는 여성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4) 정책제언

(1) 파견법 제정을 반대하고 임시직,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독자적인 법제화추진에 반대한다.

- 독자적인 법제화가 이들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못된다

- 93년, 95년 파견법이 제출되었을때 여성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일단 유보시킨 상태이나 총선이후 또다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파견법제정반대 입장 천명이 필요하다.

- 시간제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고용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변칙적인 시간제 확대가 우려된다. 또한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도 기대할 수 없다.

(2) 공평, 비차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시직, 시간제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 사회보험관계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근속시 정규직화'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 국제노동기구 [시간제노동에 대한 협약](제75호)에는 고용형태 선택의 자발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 단결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위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관계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보호대책이라고 본다.

- 변칙적인 시간제와 임시직의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92년부터 여성, 노동계에서 제출되어왔던 제안사항이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오에 따라 노사합의로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여성운동의 디딤돌로 선정된 현대화재노조와 LG화재노조의 사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3)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 수렴

가내노동자보호법 제정은 대통령선거공약,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정책이고,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는 96년에 법제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인건비를 줄이려는 기업 측의 전략으로 파견, 임시직과 함께 급증하고 있고 공식통계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무관심증인 동시에 노동법적용 제외대상인 이들 가내노동자에 대한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 하청관계를 갖는 업체가 80년 30%에서 87년 48.5%, 91년 73.6%로 증가하였으므로, 가내노동자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

현재 가내노동자들은 평균 연령이 35세 미만으로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듯이, 대부분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책임, 가내노동자로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지고 있다.

보호법의 제정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가내노동자들이 정규직화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여성의 취업영역의 확대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보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가내노동자 보호법의 내용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은 [가내노동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1995. 참조)

(4) 고용보험

국민회의는 실업급여수준을 실업발생전 임금총액의 60%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정책이고, 민주당은 육아휴직 장려금제도 적용사업장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제출하였다. 다음 3가지 점을 추가하여 제출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94년 여성노동자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여성노동자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수는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98년부터 실업급여대상 10인 이상, 고용안정사업은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복지기획단에서는 최근 2000년(?) 4대사회보험 전면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모든 피용자의 85%, 제도 도입기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는 2000년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해야 하고,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료 각출에 있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서 공공부담 원칙으로 전환해야 하고 따라서 정부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 장려금을 사용자만이 아니라 해당 노동자에게도 지급되어야 한다. 1년의 육아휴직기간중 최소 6개월 이상의 휴직급여 수준에서 급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유급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5)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을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

89년 3월 29일 근로기준법 개정당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7년이 다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상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5인 미만 사업체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지난 9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1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월급여액은 전 산업 종사자에 비해 낮고 산재발생률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94년 5-9인 사업체는 전체 산재발생률의 2.6배, 제조업 5-9인 사업체는 전체평균 산재발생률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노동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최저 근로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보호법을 전혀 적용 받지 못하고 있어 70년 전태일이 분신할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 무권리상태에 있다.(자료: 4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행령개정투쟁 공동대책위원회)

2. 여성의 고용촉진과 직업훈련

@ 고용촉진

1) 각 당의 입장

신한국당에서는 공직에서의 여성참여확대와 민간부문 유도, 여성공무원 승진할당 권장, 공기업 여성채용 인센티브제 도입을 모니터하고 지원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새추위의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에서 제시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국민회의는 공무원, 공기업,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공공부문에서부터 승진, 업무배치, 교육, 직업훈련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제출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여성할당제, 군복무 가산점제 폐지를 제출하고 있다.

2)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성차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고용 확대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여성운동계가 오랜 기간 제안한 사항이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도 제6조(잠정적 우대조치),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책참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 적극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3) 교육공무원의 승진할당제, 국공립대학 교수임용시 채용 우선권 부여도 각 당이 정책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4)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대졸여성의 채용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여성전문인력의 채용과 개발이 기업의 시장확대와 이윤추구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아래 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이은영, 1995)는 보고를 통해 민간기업에서의 여성고용도 할당제에 의해 일정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고 여성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실시에 의존하고 그 효과면에서 지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있어야 한다.

@ 직업훈련

1) 그간 여성인력양성, 직업훈련확대, 취업알선기능보강 등 여성인력을 산업현장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부 측에서 계속 제출되어왔다.

그러나 정부의 여성인력정책은 여성노동자에 대해서 여전히 저임금, 단순노동에 고용하는 인력정책으로 일관되어 왔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 방침속에서도 여전히 여성인력의 고기능화 정책은 부재하거나 매우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전직훈련과정의 강화를 정부계획에 포함하고는 있으나, 실제 부산지역 신발업계에 종사했

3. 여성의 고용평등

1)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규제와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 신설, 남녀고용평등감독관계 신설은 여성운동과 노동운동계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고, 이러한 요구가 수렴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직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

현재 우리 나라 기업의 90%가 연공급이다. 직무평가제는 직무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직무급은 대체로 여성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를 절하시키기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 또한 직무평가제 도입과정에서 노조, 여성노동자 의사를 반영, 관철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변화하여 직무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연공급체계라는 한국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법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현상황에서 직무평가제의 도입은 오히려 여성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많다고 평가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자율점검제의 정착, 행정지도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사권, 고발권 부여, 설치지역 확대, 당사자나 노조에 분쟁해결 요청권 부여
성차별 의무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근로기준법과의 벌칙조항 통일화
- 자율점검제 정착
자율점검표의 다양화, 적용사업장 확대, 실시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여성노동자 참여 전제

4. 모성보호

1) 3당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94년 2월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서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라는 방침을 수립했고, 96년 법제화, 97년 제도시행이라는 일정을 밝히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에서도 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96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마련한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의 기본구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출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사회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안 또는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국제노동기구 103호 [모성보호협약]에 근거하여 구체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협약에서는 출산휴가기간중의 소득급부를 받는 것은 여성의 당연한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고, 적용범위를 모든 공사의 공업적, 상업적 기업과 각부분에서 비공업적, 농업적 업무로까지 확대하

던 여성노동자들이 집단감원,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이들 여성인력을 위한 전직훈련이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여성인력수급정책이 부재한 점과 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실행이 빈약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각 당에서 제출한 여성인력 양성과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현장 실태를 중심으로 각당의 제출된 정책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

현행 직업훈련기관중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비율이 가장 낮는데, 이는 제도상으로는 남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운영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생활규제방식의 훈련분위기, 자동화수준이 낮은 훈련설비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전체 기능인력양성의 약 30%를 양성해내고 있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여성을 훈련시킨 곳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섬유, 공예, 사무관리, 기계, 전기 등의 분야이다.

한편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비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기능의 가장 낮은 단계인 단순기능공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질적인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인정직업훈련기관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과 아울러 훈련내용의 질 상승,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사내직업훈련에서 우선적으로 여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치 마련

사내직업훈련에서의 여성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집중업종에서 폐업, 감원이 속출하여 집단실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전체 사업내 직업훈련중 전직훈련은 0.1%인 90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은 여성집중업종이 사양산업화함으로써 인원이 감소되지만 직업훈련으로 유도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육, 훈련에서의 남녀평등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성사업장의 경우 사내훈련을 기피하고 분담금으로 대신하거나, 실시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단기양성과정이나 업무와 관계없는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해 있는 여성노동자의 향상훈련의 기회를 남녀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대부 등의 지원조치가 마련되면 여성의 직업훈련확대에 기여하리라 본다

셋째, 전직훈련, 기혼여성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여성업종에서 탈피하여 남성직종이라 생각되는 직종에 배치, 훈련하여 여성의 고기능화를 촉진해 내야 한다.

넷째, 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차별 감시기능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훈련이수자 중 본인의 자격이나 훈련내용에 걸맞지 않는 업무에 고용되는 문제, 훈련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훈련과 취업, 취업후 노동조건이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하고, 비로소 고된 훈련을 통해 배출된 여성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기능인력으로 계속 육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였고, 출산휴가기간을 적어도 12주간으로 연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 중의 소득급부는 강제적 사회보험이나 공공기금에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에서 '정부와 기업은 농업, 공업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의 여성에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을 위해 모성보호기금을 조성하거나 의료보험을 통합하여 의료보험급여에서 출산휴가 기간중의 급여를 보장'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3)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모성보호확대의 내용인 유급 태아검진휴가제, 유산휴가 법제화, 배우자의 출산간호휴가(7일 이내)는 여성운동과 노동운동계의 요구사항만큼 각 당의 정책에 모두 다 포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4) 산전후휴가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저 12주이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주단위 노동의 서구와 달리 월단위 노동에 익숙한 한국풍토에서 90일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

5) 유급생리휴가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양성평등기반의 구축, 여성노동자의 저임금해결, 직장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 등의 제반 조건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 유급생리휴가는 존속되어야 하고, 남녀 공통의 건강휴가로 발전되는 방향에서 거론되어야 한다고 본다.

6) 직업병

각종 직업병에 대한 조사, 통계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직업병은 수치상으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근속년수가 짧아 직업병이 있어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직업병은 훨씬 높게 나타날 것이고, 특히 유기용제 중독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유기용제중독은 필연적으로 여성의 모성기능에 치명적이고, 최근 양산LG전자부품(주)의 솔벤트중독으로 인한 남녀노동자의 생리기능 이상은 커다란 사회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94년 2월경부터 솔벤트5200과 SPG6AR혼합세정제를 사용해온 노동자들은 주야 맞고대에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면서 어지럼증, 두통, 손떨림, 부분마비, 다리와 허리의 통증, 기억력감퇴, 빈혈 등의 증세를 2-3가지씩 앓아왔고, 7월 집단중독사건이 터지면서 세계최초로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피해노동자의 70%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직업병으로 판정된 23명은 재생불량성 빈혈, 조기난소부전증, 골수기능약화라는 병명을 받았고, 이들중 한명의 진단서에는 "평생 호르몬제를 투여받아야 하며... 불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합병증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더구나 솔벤트 중독에 대한 치료약, 치료방법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연구대상이 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피해노동자들은 사측의 무성의로 치료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산지역 여성단체,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전 사업장 적용확대가 요구되며, 산업안전법의 준수가 더욱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유기용제 취급업체에서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야간작업, 시간외노동, 산업안전법 준수여부 등)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통해 다시는 솔벤트중독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타

1)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과 이행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97년 이후에나 중요한 협약들을 비준할 계획으로 밝혔다. 103호 모성보호조약, 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조약, 156호 남녀가족부양자의 평등대우조약, 171호 남녀야업보호조약이 제시되고 있다.

각 정당의 정책으로 위의 조약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비준할 계획임을 입장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2) 산재보상보험제도의 확대

금융, 보험, 서비스업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산재환자에 대한 한방진료혜택은 96년 3월 15일 노동부에서 1년간 시범실시한 후 진료의 성과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모든 한방의료기관에 대해 한방진료를 허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3) 직장여성의 경우 탁아비용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국민회의 정책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25조(세계지원)에는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은 세계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세계감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육아의 남녀공통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직장여성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육아휴직기간의 호봉인정에 대한 민주당 정책에 대하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급에 따른 호봉인정이 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하다.

호봉인정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차휴가 산정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현재 노동부 지침은 육아휴직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하여 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출근률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운동계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오고 있다.

5) 여성복지예산 확대

각 당의 여성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15대 총선과 여성정책 10대 과제]에서 정부의 복지예산을 200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로 확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복지예산을 40% 이상 증액할 것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복지예산 확충방안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제출하고 있다.

- 세금을 신설하기 전에 왜곡된 조세, 재정구조의 개혁을 통해 최대한의 재원을 확보
- 그간 누수되었던 세금에 대한 징세확대와 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조세 감면 범위의 축소 및 불로소득 등 지하경제에 대한 과세 확대
- 재정지출구조의 조정을 통해 경제개발비나 국방비 등 비대화된 세출을 축소,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확대
- 세제잉여금의 활용

또한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금 설치(여성발전기본법 제4장) 등 예산확대 계획에서도 일정한 모금액목표액의 설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부문

이 상 덕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부회장)

1. 15대 총선 공약사항

신 한국 당	국 민 회 의	자 민 련	민 주 당
<p>*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p> <p>1) 직장내 성희롱보호 대책마련</p> <p>2) 가정폭력피해자 권익보호-제도마련</p> <p>3) 대중매체 등 성폭력 유발요인 제거</p>	<p>*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예방과 피해자보호</p> <p>1) 가정폭력관련법 제정</p> <p>2) 여성폭력, 아동학대 신고센터와 상담소를 시·군·구 단위설치</p> <p>3) 학교, 학부모, 지역행정기관, 사회단체, 경찰공동의 학교폭력대책기구 설치</p>	<p>*공약 참고자료를 입수하지 못함.</p> <p>단, 한겨레신문에 인권분야에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만 보도됨)</p>	<p>여성인권부문: 성폭력 및 가정폭력문제</p> <p>1) 형법 32조 개정- '정조에 관한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p> <p>2) 성폭력 관련법 개정- 성폭력 범죄 유형을 세분화, 가해자에 대한 자격정지, 교정처분, 교육훈련, 친고죄 폐지등</p> <p>3) 성폭력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확대</p> <p>4) 보건소, 종합병원 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p> <p>5) 성교육 강화</p> <p>6)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제정</p> <p>7) 퇴폐향락문화 근절을 위한 제반법률강화와 대책수립</p> <p>8) 경찰, 검찰내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p>

신 한국 당	국 민 회 의	자 민 련	민 주 당
<p>*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p> <p>1) 여성발전기금</p> <p>2) 여성복지예산확대</p>	<p>*가정, 학교, 사회교육기관의 성차별 및 성역할 정형화 개선 제도 정착</p> <p>1) 대중매체의 성차별 내용 및 성의 상품화 배제를 위한 기준강화</p>		<p>기타, 동성애가구, 독신가구, 이혼자에 대한 편견 등 고정관념 수정해야</p>
<p>*성평등의식과 문화 정착</p> <p>1) 각급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성차별 요소배제</p> <p>2)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성차별 감시 체제를 확립</p> <p>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문화의 진작과 사회교육, 홍보활동 지원</p> <p>*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확대</p>	<p>*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p> <p>1) 직업훈련, 고용부담금 인상 및 의무고용대상 사업체 확대, 장애인 고용기업에 세제혜택</p> <p>2) 97년까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상향조정</p> <p>3) 장애인복지법 등 여성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정책과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일정보장</p> <p>4) 장애인연금제도 실시하여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자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저등급보험료의 일부를 균등 지원</p>		<p>*장애인 여성</p> <p>1) 직업재활서비스</p> <p>2) 각종 수공예품 상설매장개설</p> <p>3) 공공기관, 시설내 자동판매기, 우표, 홍삼, 담배등 판매점 우선 허용</p> <p>4) 직업훈련기회부여의 훈련의 장 마련</p> <p>5)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 활용체계와 진단체계 구축</p> <p>6) 장애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확충</p> <p>*장애아보육시설 설립</p>

신 한국 당	국 민 회 의	자 민 련	민 주 당
	<p>5) 자영업이 가능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려서 장기적으로 용자</p> <p>6) 장애인 전문기능대학을 설립, 기능사 자격을 부여하여 장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육성</p> <p>*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설치-시도별 1개씩 의무화</p>		

2. 평 가

지난 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중 “여성의 인권”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에 의한 향유를 침해하고 약화시키거나 무의미하게 한다. 여성폭력철폐선언과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 외세협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적노예화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의 국제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와 상반되며 퇴치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통적, 관례적 혹은 현대적 관습의 어떠한 해로운 부분이라도 금지되어야만 하고 철폐되어야만 한다. 정부는 회원국 혹은 개인에 이해 잘못이 저질러졌거나 묵인되었던 간에 사적 및 공적활동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행동을 취해야만 한다.”로 여성인권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경 세계여성회의 참가를 위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한국적 상

황에서의 여성인권유린의 현장을 1) 가정내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2) 성폭력 3) 매매춘 4) 인신매매 5) 일본군위안부 문제 6)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 폭력 7) 퇴폐적인 성산업 8) 외국인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9) 여성장애인 인권문제 10) 태아성별 검사 후 여아를 낙태시키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공약을 검토하면

- 1) '여성인권'문제의 통합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분 과제별 공약을 제시
- 2) 매매춘 문제, 일본군 위안부문제,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폭력문제, 외국인여성 노동자에 대한 폭력 문제, 태아성감별 문제 등 그동안 한국여성운동 내에서 제기되어왔던 문제에 대하여 관심 부재
- 3) 여아에 대한 폭력, 성착취, 성적학대, 보건, 국제적 인신매매 등 제4차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정책 부재
 - 예, 10대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평균 12.8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음. 특히 10대 소녀들의 경우 가출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퇴폐향락업소에 취업, 매춘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가출소녀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쉼터 확대, 예방교육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 4)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제정에 대해 각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현재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 : 총선 후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 단 신국당이 '제도'마련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아쉽다.
- 5) 여성복지관련 예산확대에 대한 신한국당의 공약은 매우 고무적, 그러나 단계별 예산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이 급속히 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되어야 함. 특히 앞으로 목적부분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고, 부분 과제별로 '여성인권'의식의 확대를 위한 부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전까지 시행령 상에 보완되어야 함.

여성발전기금 운영 결정과정에서의 민간단체 참여를 보장하여 관 주도의 기금 운영은 피해야 함.
- 7) 여성장애인문제에 대한 국민회의의 공약은 고무적임. 단 장애인 연금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부모부담이 공동으로 되어야 한다고 봄. 민주당의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 활용체계와 진단체계 구축은 좀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함. 그러나 여성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고무적임.

- 6) 성희롱 부분에는 신한국당과 타당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

여성계의 요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반영되어야 함.
- 7)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공약 사항이 미흡, 민주당이 언급하고 있으나 자료에는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을 뿐 '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8) 민주당의 공약 중 동성애가수, 독신가수, 이혼자에 대한 고정관념 수정을 구체적으로 그 정책을 제시해야 선언적인 것은 무의미

위 양 자

(사단법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부회장)

I. 보육정책

80년대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급증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보편적이면서도 심각한 사회적 요구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는 90년을 전후하여 필연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접하게 된 민간 보육단체와 일부 여성단체가 소외되고 방치되어온 아이들의 보육을 국가를 대신해서 담당해왔다. 이 과정을 통한 보육문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몇 년간 국가의 본격적인 보육정책 실시에 의해 아동 방치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저소득층 지역에 상당한 수의 보육시설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그간 여성의 권리를 중심에 두었던 보육이념에서부터 이제는 보다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한 보육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까지 그 폭이 넓혀져 왔다. 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다른 사회복지부문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율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추세이고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서의 육아문제 해결은 보다 지속적인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보육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었고, 또한 국가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 진행시켰다면 앞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의 방향은 양적인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질의 문제를 어떻게 정책 속에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보육사업에 있어서 양과 질의 두측면은 형평성을 유지하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보육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아동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오늘 평가의 기준은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영유아와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를 정책에 어떻게 수렴하였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보육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1) 대선공약과 제7차5개년 계획

<대선공약>

- 일하는 주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 가. 현재 6천2백여개소의 보육시설을 '96년까지 3만4천개소로 증설하여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나. 정부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교원탁아소를 설치한다.
- 다. 보육시설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여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 라. 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체의 기부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사업을 사회복지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한다.

< 제7차 5개년 계획 >

- 보육서비스의 확대

가. 지역보육의 확대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신규설치

- '92년까지 극빈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 87,0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95년까지 저소득층 보육대상아동을 포함한 일반 보육대상아동까지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

* 저소득층 취업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보육시설의 확대전망

(단위 : 개소)

연 도	'92	'93	'94	'95
신규설치보육시설	50	100	100	100
기존시설 전환	485	270	200	-

*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 지역특성에 부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구.교재 개발.보급, 지역실정에 맞는 보육료 상한선 고시, 정부지원 범위 점차 확대

나. 직장보육의 확대

* 중소, 영세기업체 밀집지역인 공단지역에 보육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충

* 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을 점진적으로 확대

- * 공공기관의 보육시설 설치 적극 유도
- *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업체에 대하여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

다. 가정보육의 확대

- *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 확대 설치

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 * 중앙 및 지방보육위원회 설치
- * 시·군·구 단위로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2)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 중 보육부분(1995년)

(1) 민간참여를 통한 보육시설 확대 및 내실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 보육아동을 둔 30~40 가구의 조합원이 출자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식의 보육시설에 건물임대비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 '96년도 복지부 지침에 공동협동조합 설치 및 지원근거 규정을 도입.
- '96 ~ '97년도에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의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방안 강구

(2) 종교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 종교시설의 보육시설화를 제약하는 애로 요인을 제거
- 시설비 지원규모 상향조정 : 1개소당 2,500만원 → 5,000만원
- 2,100개소의 종교시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보

2. 평 가

1) 전반적인 보육정책

< 보육현황 >

'95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8,129개소이고, 보육아동수는 269,538명으로

92년과 비교할 때 약 50%가 늘어난 추세이다. 특히 94년과 대비해 볼 때 시설수는 16.5%, 보육아동수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계하고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 102만명중 95년 5월말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연도별 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단위:개소,명)

구 분	'92	'93	'94	'95. 1/4	'95. 2/4	비고('94. 대비)
시설수	4,513	5,490	6,975	7,643	8,129	16.5%증가(1,154개소)
아동수	123,297	153,270	219,308	248,658	269,538	23%증가(50,230명)

<표2> 보육대상 아동 추계 (단위:천명)

구 분	대 상 아 동		
	1995	1996	1997
0~5세아동	3,977	3,987	4,002
취업모의 0~5세아동	1,810	1,828	1,846
보육대상아동	1,021	1,031	1,041

<표3> 보육사업 예산변화 현황 (단위:억원)

년 도	'93	'94	'95	'96
총 예산		1,365	2,000	2,375

< 보육사업예산 >

보육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면 <표3>에서 볼 수 있도록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육시설의 증가비율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 내실을 기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보육비용 >

보육비용은 법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어서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공립시설과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민간법인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비, 운영비, 개 보수비,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 운영비는 표준보육단가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경우는 전적으로 부모부담이어서 부모의 부담이 크고 운영자의 부담 또한 가중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별 지원의 내용은 생활보호자, 편부(모)가정의 자녀는 전액면제, 일부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표4>의 기준으로 국공립 보육단가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96년 복지부 지침을 보면 아동별 지원의 대상을 57,500명(법정저소득층 10,000명, 기타저소득층 47,5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4> '96년도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가구원수	2인까지	3인 이하	4인 이하	5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소득	80만원까지	9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110만원까지

< 민간보육시설지원 >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86%(법인시설포함)로 전체 보육아동의 70%를 보육하여 보육사업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5 참조>

그러나 이렇듯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95년에 교재교구비명목으로 1억원이 편성된 것이 처음이었고 96년도 또한 전체 보육예산 2,375억원 중 민간.가정시설에 편성된 예산은 6억원에 불과하다. 이외에 연말 불용예산이 정부지원시설에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별도 지원되던 것이 93년부터 민간.가정보육시설에도 지급되고 있지만 이는 고정예산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정부의 보육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의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5> 설립주체별 현황 (단위:개소,명)

구분	계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계	개인	단체	법인		
시설수	8,129	1,004	3,639	2,725	23	891	63	3,423
아동수	269,538	78,618	152,226	76,520	863	74,843	1,580	37,1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육정책안은 단기적으로 볼 때 시설의 확충이라는 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이 비현실적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책수립이 없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전체적으로 공공보육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보육정책의 과제

(1)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96년도 복지부 지침과 관련하여 정부의 보육사업 확충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면 '95년부터 '97년까지 약 1조 3천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써 아동 427천명을 추가보육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 요보호대상 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도록 되어 있다.

<표6>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 (단위:개소)

구분	'95	'96	'97	계('95~'97)	
계	2,246	2,696	2,648	7,590	
공공(국고보조)	소 계	1,000	1,050	1,100	3,150
	신 축	150	150	150	450
	증개축	75	100	125	300
	사회복지.종교. 학교시설부설	775	800	825	2,400
직 장	소 계	446	446	548	1,440
	공공기관 내	76	76	88	240
	기업	76	370	460	1,200
민 간	800	1,200	1,000	3,000	

이는 97년까지 전체아동의 60%를 목표로 하는 계획인데, 93년도 보육비율 13%와 비교한다면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추진실적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97년까지 보육기반을 완비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훨씬 못미치는 실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보육율이 60%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수요 충족률이 지 보육시설이 생길 경우 일하겠다는 막대한 잠재수요에 대한 대안이 포함된 확충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인 조사와 통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표7> 지역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95.2/4분기 현재)

구분	시도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육시설	계	8,129	1,880	668	448	458	246	360	1,693	272	285	240	249	259	302	615	134
	국공립	1,004	392	72	24	29	14	14	118	51	35	28	31	38	63	87	8
	민	3,639	477	396	254	224	94	123	785	157	154	163	134	149	134	302	93
	개인	2,725	403	330	184	208	28	98	728	75	99	88	36	46	94	256	52
	단체	23	5	1	0	0	11	0	4	1	0	0	1	0	0	0	0
	법인	891	69	65	70	16	55	25	53	81	55	75	97	103	40	46	41
	직장	63	23	6	6	6	2	4	5	1	1	1	0	0	4	3	1
가정	3,423	988	214	164	199	136	219	785	63	95	48	84	72	101	223	32	
보육아동	계	269,538	63,251	23,214	13,990	12,086	10,261	7,411	37,564	11,655	12,268	11,137	13,115	15,732	12,099	19,759	5,996
	국공립	78,618	35,019	6,802	1,653	2,612	1,337	651	7,621	3,345	2,622	1,817	2,095	2,570	3,790	6,249	435
	민	152,226	16,430	13,819	10,766	7,039	7,464	4,433	22,258	7,643	8,419	8,764	9,989	12,427	6,894	10,824	4,997
	개인	76,520	11,914	7,937	4,002	5,426	2,522	2,251	18,308	2,051	3,591	2,540	1,870	2,438	2,959	7,085	1,626
	단체	863	156	31	0	0	413	0	164	68	0	0	31	0	0	0	0
	법인	74,843	4,360	5,851	6,764	1,613	4,529	2,242	3,786	5,524	4,828	6,224	8,088	9,989	3,935	3,739	3,371
	직장	1,580	462	70	67	113	36	106	191	35	122	39	0	0	166	76	97
가정	37,114	11,340	2,523	1,504	2,322	1,424	2,161	7,494	632	1,105	517	1,031	735	1,249	2,610	467	

♣ 보육시설의 확충이 대도시중심의 행정편의적이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동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표7>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시의 보육시설수는 4,060개로 전체 보육시설수 8,129개의 50%를 차지한다. 즉, 수도권지역에 전체 보육시설의 50%가 몰려있고 나머지가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아동의 경우는 대도시의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시설 이용에 있어서에 훨씬 불이익을 당하는 실정이고 동일한 시의 경우도 구별로 보육시설 수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공립시설 신축시에는 거리 제한이 없고 지역수요에 의존하기 보다는 설치할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무작정 설치에 따라 인근 시설들이 문을 닫게 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별 실정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시설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전체 보육시설의 13%에 불과한 농어촌 지역에는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시설의 모델이 나와야 하며, 0.7% 뿐인 직장보육시설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체계와 획기적인 예산투자계획 속에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시설확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분히 대도시 중심의 행정편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의 획일화된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반영되는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적극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각 지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아동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비용부담이 수혜자 부담원칙이어서 기본적으로 공보육적 성격보다는 사보육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보육아동의 50% 이상을 돌보게 될 민간.가정보육에 대해 <표6 참조> 정부는 95년에 처음으로 교재교구비를 책정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고는 하나 장차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사보육의 위치로 규정짓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방향이 다분히 시설중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을 중심에 놓고 사고한다면 동일한 아동이 어느시설을 이용하던지 동일한 서비스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아동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시설의 운영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육의 질을 낙후시키는 결과이다.

아동중심의 보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사적 서비스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기적인 확충을 통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려 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간보육을 시장원리에 맡겨 버리려는 것은 국가의 무책임한 방치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예산편성을 함으로 많은 민간시설들이 준공공적 영역의 보육을 담당하도록 장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이제는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내실을 기할 때이다.

우리나라 보육사업은 단기적인 양적 확충에 그 핵심이 있는데, 확충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질적인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안에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과 종교단체시설 활용방안을 통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민간보육시설에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육아형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식 보육시설이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보육시설의 내실화를 내오기 위해서는 공동육아협동조합이라는 특정한 부문이나 종교단체를 통한 단기적인 시설확충 지원계획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확충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보육시설의 기능이 사보육의 차원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성을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관점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보육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권익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육현장을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96년도 복지부 지침은 국공립시설의 교사위주로 개편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많은 민간시설에서 보육사업에 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는 처사이며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면서도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II.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의 문제는 기혼여성의 증가 비율이 높아지고 아동의 양육이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면서 영유아보육의 중요성 뿐 아니라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호·지도의 문제를 위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뿐 아니라 아동들이 방과후에도 전인적인 인격향상을 위한 장으로,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가족서비스적 내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야 한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문제는 이미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로 선정된 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주관하여 '95년 10월 ~ '96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고 지난 3월 7일 정무장관(제2)실 주최로 방과후 아동지도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청회를 통해서도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도입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토론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쟁점들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과제중 - 방과후 아동지도 부분 - >

- 필요성 : * 부모취업시 아도가 방과후에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주부들의 취업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 각종안전사고 및 유해한 환경에의 노출 위험성
 - 국민학생중 약 70~80만명이 3 ~ 7시간을 보호자 없이 방치
 - 맞벌이 부부의 82.4%가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 제기
 - *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는 취업모의 요구에 부응할 뿐 아니라 주부들을 활용함으로써 여성고용증진 효과도 달성
 -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의 아동지도 및 보호가능
 - 지역 내에서 어머니와 아동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가능
 - 양질의 아동지도 서비스 가능
 - 아동지도사 보급확대로 여성의 취업기회 제공

정책방향 :

- 방과후 아동지도 시범시설 운영: '95.10.20~12.20까지 2개월간
 - 현장에서 직접 시범적용하여 도입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지원사항 파악
- 주관기관 : 한국여성개발원
- 교육기간 2개월, 지도교사 2인, 하교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 필요한 설비와 지도에 사용할 프로그램 구성
 - 시범교실 운영위원회 구성
- 교장.교감.학교학부모대표, 방과후지도교사, 대상아동의 학부모로 구성
- 시범교실 운영에 관련된 제반사정 건의 및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
 - 실시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적으로 실시 유도
- 시범교실의 실시과정, 실시효과 등을 평가하여 활성화 모색

1. 정책결정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

방과후 아동지도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졸속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한 것일 뿐 대선공약이나 기타 다른 여성정책이나 교육정책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경제정책과 맞물려 갑자기 돌출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있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주체인 아동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미 저소득층 지역에서 그 요구를 받아 운영해 온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기왕의 사례들에 대한 수렴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책수립과 정상에서 관주도식의 행정을 극복하지 못함이라고 본다.

2.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할 부서의 문제

현재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3장 16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95년도까지만 해도 이 조항은 지방보육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95년말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 과제로 선정이 된 이후 96년 1월 1일부터 전국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이 12세까지로 연장되었다(95.12.15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거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사항임).

이는 그동안 방과후 아동의 보호에 대해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과 비교할 때 미약하나마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에 정부에서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지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취학아동들이기에 취학전 아동의 보육문제를 제도화한 영유아보육법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복지적 차원, 교육적 차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의 지원 등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가족서비스적인 성격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자리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 그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보다는 만18세까지의 아동에 관한 복지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에 방과후 아동지도의 내용을 두어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방과후 아동지도의 특성상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협조가 요구된다.

3. 방과후 아동지도의 정책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이제 그 단초가 마련되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데 우려점이 있다.

방과후 아동보호 역시 영유아보육사업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제반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각으로 시작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III. 학교급식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들에게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해당연령에 제시되어 있는 영양권장량의 1/3선을 공급하고 합리적인 식생활의 지식과 습관을 기르기 위해 학교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다.

1. 학교급식과 관련한 정부정책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재임 이후 수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안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 관련기관의 정책건의 등이 발표되었다.

1) 교육부의 학교급식발전방안

* 97년까지 초등학교에 학교급식 전면확대 실시

- 제7차 5개년 계획 기간중('92~'96)학교급식 시설완료

* 발전방안

-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좋은 식사를, 더욱 교육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4대 발전방안 수립을 실천

- ①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 ② // 제도운영의 효율화
- ③ // 교육효과의 극대화
- ④ // 중요성의 홍보강화

2)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사회참여확대 10대과제 중

- 학교급식의 전면적 확대 -

- 필요성 * 자녀의 도시락문제의 해결 없이는 원만한 취업활동이 곤란
 * 공동식사를 통한 학생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바른 식생활습관 유도
- 확대방안 * '97년말까지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
 *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는 '98년까지 대상학교의 절반 정도 실시
 * 학교급식시설·설비비 예산을 증액
 * '96년 1,632개의 초등학교에 새로 급식시설 설치
 *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2. 학교급식의 실시현황

정부는 1997년도 초등학교 학교급식 전면 실시, 1998년도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절반 정도의 실시를 목표로 급식사업을 추진 중인데,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급식 실시학교는 5,772개교 중 3,314개교로 학교수 대비 57.4%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고, 초등학교 390만5천명 중 150만7천명이 급식수혜를 받고있어 학생수 대비 38.6%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96년도 급식신설예상학교수는 977개교이다.

<표1> 교육부 발표에 의한 연도별 초등학교 학교급식 추진실적률(%)

년 도	'88	'89	'90	'91	'92	'93	'95	'95
학교수대비	8.9	9.5	10.2	13.3	16.3	22.3	38.2	57.4
학생수대비	5.3	5.4	6.1	8.2	10.2	14.5	24.0	38.6

<표2> 지역별 학교급식 실시현황 (94년 현재)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학교수대비	39.2	22.4	13.9	18.8	10.1	26.4	20.8	48.8
학생수대비	28.5	17.7	8.2	7.8	7.2	17.0	9.2	47.2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학교수대비	42.0	42.9	40.0	51.0	49.0	29.2	85.8	38.2
학생수대비	29.1	36.9	43.0	39.5	44.1	19.0	83.2	24.0

3. 평 가

초등학교 학교급식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급식 발전방안'으로 발표된 정부의 학교급식 소요재원의 안정화 방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의 책임을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표3> 학교급식과 관련한 일반회계예산

구 분	초등학교 중식 지원비	급식시설설비지원
94년도 일반회계예산	16억2천만원<중식지원6,000명(1,500원/1식,180일)>	200 억원
95년도 //	//	-
96년도 //	19억8천만원<중식지원5,500명(2,000원/1식,180일)>	-

1) 학교급식과 관련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에서 시설설비비용을 부담해야 한

다.

교육부의 계획은 95년도에 1,418개교에 대한 급식을 추가로 실시하여 급식수혜대상을 160여만명으로 끌어올리되 소요재원의 절반 정도를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전국 5,900여 초등학교에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일제히 학교급식후원회에 가입해 후원회비를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였다. 국민학교 1개교당 급식시설 설비비가 도시의 경우 1억5천만원 ~ 2억, 농촌의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을 예상하였는데 97년까지 정부의 예상지원액 2천억원(연간7백억원)을 뺀 5천여억원이 학교급식후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급식 시설설비비용의 부담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필요비용의 50%정도를 학부모 부담을 전제로 추진되었고 심한 경우 필요비용의 90%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킨다는 방침이 세워진 곳조차 있다.

2)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정책에도 나타났듯이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실시는 늦어도 97년까지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는 전망이 보인다.

정부는 98년까지는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교 50% 정도를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3) 학교급식 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급식법 제5조2항에 의하면, 학부모,지역사회인사나 법인, 단체들로 학교급식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후원회의 역할은 다분히 재원조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인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급식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재정에 대한 집행이나 보고, 부식업체의 관리감독, 재료의 선택 등 학교급식운영에 있어서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학교급식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다.

IV. 각 정당 여성정책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한다.

- 1) 보육시설확충 계획에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 2) 보육정책이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아동중심으로 그 축이 전환되어야 한다.
- 3)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내실을 기해야 한다.
- 4) 방과후 아동지도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정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담보하는 가족서비스적 측면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현실에 근거한 과제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정당의 여성정책 중 관련항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1. 신한국당

신한국당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 촉진한다.'의 3,4,5,6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96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확충사업이 목표달성 가능할지 의문이다. 기존의 민간시설이 휴,폐업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용자제도에만 의존해서 시설확충이 가능하며, 이런 확충계획으로 4항의 보육의 질 개선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국,공립에서 회피하고 있는 영아나 장애아 보육시설의 확충은 필요성의 절박함에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를 위한 예산은 밝히고 있지 않다. 어려운 문제의 해결일수록 예산에 관한 지원계획이 확실해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략의 계획이라도 있다면 듣고 싶다.

신한국당의 정책은 국민연금기금 활용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양적 확충을 하려는 것을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꼭 국민연금용자제도를 보완해 거치기간에 대한 이자정도는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이는 담보만 있으면 무자격자들이 시설을 만들고 속성으로 원장연수를 통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즉, 기존의 민간시설들이 이용자제도를 활용하여 휴,폐업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육사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영리화를 억제하고 준공공성을 담보할 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해 본다.

또한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주체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속에 국,공립과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차이를 극복할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지, 만약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민간시설 급여개선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2.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의 '모성보호 및 아동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여성관련복지 부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한다.'에 관해 살펴보면,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을 사회보장 수급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전체 아래 정책에 있어 의무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임의적인 실천을 배제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한 문제해결의 측면보다는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점과 아동이 평등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에서 그렇다.

새정치국민회의의 정책 가운데 다른 당과 달리 1)탁아소 확대 중 (4)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하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모든 아동에 대한 평등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을 보육하는 민간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높은 요구가 있다. 95년까지는 교재교구비 항목으로 1회 지급되던 것을 항목을 확대한다면 어떤 항목이 가장 시급히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조세 재정 및 개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3. 민주당

민주당은 여성복지 부문 가운데 - 탁아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2000년까지 보육을 100%제고, 탁아문제 해결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우며 육아를 국가·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현 영유아보육법의 근간을 이루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대해 재정 뒷받침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국가의 육아에 대한 의무규정이 빠져 있음을 지적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공동육아, 협동조합제도, 종교·사회단체시설 이용 권장과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과 기존의 민간보육시설에 관해 언급이 없어 보육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보육을 100%제고, 탁아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4. 총평

각 당 모두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의 필요성과 영아·장애아 보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방과후 아동지도 제도에 대해서도 각 당이 모두 언급하고는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다. 제목만 설정하고 구체적 안이 없는 당도 있다. 이제 시작의 시점에 있는 문제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의견수렴 과정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가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보육상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입장에서 충실히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듯 한 아쉬움이 있다.

여성의 인권, 아동의 인권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여성, 그 아동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정책을 준비한다면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